

1. 의결주문

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,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「계엄법 시행령」 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

연번	법령명	개정내용
1	계엄법 시행령	인감증명서 → 인감증명서[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(이하 "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"이라 한다)로 갈음할 수 있다]
2	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	
3	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	

3. 주요토의 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1조(「계엄법 시행령」의 개정)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보상청구인의 인감증명서[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(이하 “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”이라 한다)로 갈음할 수 있다] 1부 별지 제3호 서식 중 “인감증명서”를 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의 개정)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3호 중 “인감증명서”를 “인감증명서[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(이하 “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”이라 한다)로 갈음할 수 있다]”로 한다.

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 1부

별지 제3호 서식 중 “인감증명서”를 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 서식(가) 중 “인감증명서”를 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1호 서식 중 “인감증명서”를 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인감증명서”를 “인감증명서[「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(이하 “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”이라 한다)로 갈음할 수 있다]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인감증명서”를 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”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중 “인감증명서”를 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중 “인감증명서”를 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보상금의 지급절차)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(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4조(보상금의 지급절차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보상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</u>	2. <u>보상청구인의 인감증명서</u> [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(이하 “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”이라 한다)로 갈음할 수 있다] <u>1부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위로금등의 지급신청) ① 신청인은 법 제8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14조(위로금등의 지급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(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하며, 위임자의 <u>인감증명서</u> 를 첨부한다) 1부	3. ----- ----- ----- -- <u>인감증명서</u> [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(이하 “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”이라 한다)로 갈음할 수 있다]”----- --
4. ~ 7. (생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동의 및 청구) 제17조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서를 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20조(동의 및 청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</u>	2. <u>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</u> <u>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 1부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
**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동의 및 지급청구)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정본, 신청인의 <u>인감증명서</u> (제출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) 및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22조(동의 및 지급청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인감증명서</u> [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(이하 “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”이라 한다)로 갈음할 수 있다]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